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

제정 2022. 1. 25. 규정 제6호
개정 2022. 5. 30. 규정 제27호
개정 2022. 12. 27. 규정 제32호
개정 2023. 12. 27. 규정 제49호
타법개정 2024. 3. 26. 규정 제5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합천군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직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단의 조직과 정원 및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공단의 설립 조례와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직제의 개편) 공단의 기구설치 및 직제의 개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합천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구성원) 공단에 이사장, 이사 및 감사와 직원을 둔다.

제5조(이사장)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진다.

제6조(비상임 이사) 공단에 6명의 비상임 이사를 두고, 비상임 이사는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경제건설국장, 공기업담당 부장으로 하고, 세무 및 회계 전문가, 공기업 운영에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제7조(비상임 감사) 공단에 1인의 비상임 감사를 두고, 감사는 군의 재무과장으로 한다.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8조(직무대행)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비상임 이사인 합천군의 경제건설국장, 공기업 담당부장, 재무과장 순으로 업무를 대행한다.

제9조(직원) ① 직원의 직군은 일반직군으로 한다.

② 직원의 직급은 3급 내지 7급, 공무원으로 구분한다.

제10조(기구) ① 공단에 안전감사팀, 경영기획부, 관광사업부, 수질환경부, 생활환경부를 둔다. 단 관광사업부, 수질환경부는 2022. 7. 1.일부터, 생활환경부는 2023. 1. 1.일부터, 안전감사팀은 2024. 1. 1.일부터 기구를 둔다. <개정 2023. 12. 27.>

② 공단의 기구는 별표1과 같다.

제11조(직위) 제10조의 각 부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제12조(정원) ① 공단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2와 같다.

② 계약직과 비정규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따로 둘 수 있으며, 다만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이사회의 의결을 득한 후 증원할 수 있다.

제13조(근속승진에 따른 정원관리) 이사장은 인사규정 제27조에 따라 근속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된 자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사무분장) 안전감사팀, 경영기획부, 관광사업부, 수질환경부, 생활환경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7.>

(안전감사팀) <신설 2023. 12. 27.>

1. 감사
2. ESG 경영 업무
3. 윤리·인권경영 업무
4. 경영평가
5. 안전관리 총괄
6. 고객만족도 조사 총괄

(경영기획부)

1. 조직 및 정원관리
2. 이사회 및 인사위원회 운영
3. 삭제 <2023. 12. 27.>
4. 복무단속 및 지도
5. 삭제 <2023. 12. 27.>
6. 복리후생관리
7. 직인 및 단규관리
8. 공단 재산관리
9. 직원의 교육훈련, 고충처리 및 제안사항
10. 문서 및 도서관리
11. 예산의 편성
12. 지출 및 결산업무
13. 공사·물품·용역에 대한 계약체결
14. 금고관리
15. 수입지출외 현금의 출납 및 보관
16. 장비 및 물품의 관리
17. 전산관리업무
18. 수입업무 총괄
19. 기타 타 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

(관광사업부)

1. 합천영상테마파크 관리·운영업무
2. 정양레포츠공원 관리·운영업무
3. 오도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업무
4. 시설물 안내 및 이용홍보
5. 재산임대 및 사용허가
6. 시설물 유지보수 및 경미한 수선업무
7. 기타 시설물의 통상적인 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수질환경부)

1. 하수도 기본계획 관리 및 정비계획 이행업무
2. 공공 및 소규모 하수처리장 관리·운영업무
3. 야로 및 울곡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관리·운영업무
4. 중계펌프장 관리·운영업무
5. 시설물 환경관리 교육 및 관리 운영업무
6. 시설물 유지보수 및 경미한 수선업무
7. 시설물 관리 및 홍보
8. 기타 시설물의 통상적인 유지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생활환경부)

1. 소각시설 기본계획 관리 및 정비계획 이행업무
2. 소각장 관리·운영업무
3. 합천, 삼가, 야로매립장 관리·운영업무
4.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슬러지 처리시설 관리·운영업무
5.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운영업무
6. 종량제 봉투 판매사업
7. 시설물 유지보수 및 경미한 수선업무
8. 시설물 환경관리 교육 및 관리 운영업무
9. 기타 시설물의 통상적인 유지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권한과 책임) ① 모든 직원은 분장된 업무의 범위 내에서 직무권한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권한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부 등) ① 공단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도의 부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내규로 정한다.

제17조(사업소 설치 등) ① 이사장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정원의 범위 안에서 단위 사업장 별로 사업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시행내규)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7호, 2022. 5. 30.]

이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2호, 2022.12.27.]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9호, 2023.12.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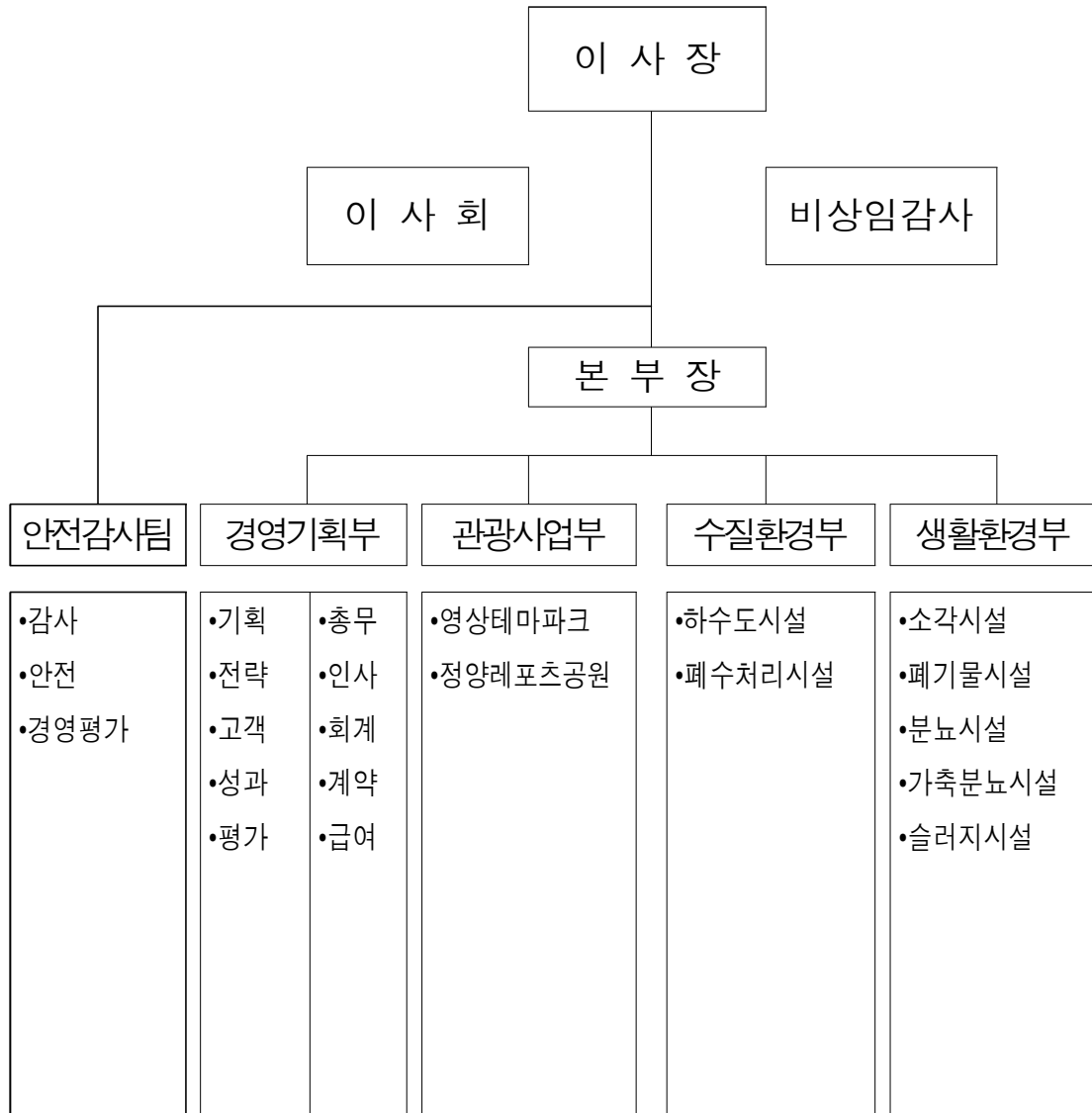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1호, 2024.3.26.]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제10조 관련) [개정 2022.12.27.] [개정 2023.12.27.]

합천군시설관리공단 기구표



[별표 2](제12조 관련) [개정 2022.5.30.] [개정 2022.12.27.] [개정 2023.12.27.] [개정 2024.3.26.]

정 원 표

구분	부별	인원	임원	군청 파견	안 전 감사팀	경 영 기획부	관 광 사업부	수 질 환경부	생 활 환경부	임 금 피크제
총 계		106	1		3	7	23	37	35	
임 원		1	1							
일 반 직	소계	83			3	6	8	36	30	
	3급	2				1		1		
	4급	7			1	1	1	2	2	
	5급	14			1	1	2	5	5	
	6급	34				2	3	17	12	
	7급	26			1	1	2	11	11	
공무직		22				1	15	1	5	
파 건 공무원										

※ 임금피크제 별도정원